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757호
2. 발 의 자 : 이 성 배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4월 3일
5.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II. 제안이유

- 최근 청소년의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며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학교에서 약물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전문가를 통한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여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자 함.
- 특히 미국의 청소년마약퇴치위원회(COYAD)와 같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체계적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학교의 장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IV. 관련법령

1.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4. 4. 12. ~ 4. 16.(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이성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757호로 발의되어 2024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학교 내 캠페인 등을 연계하여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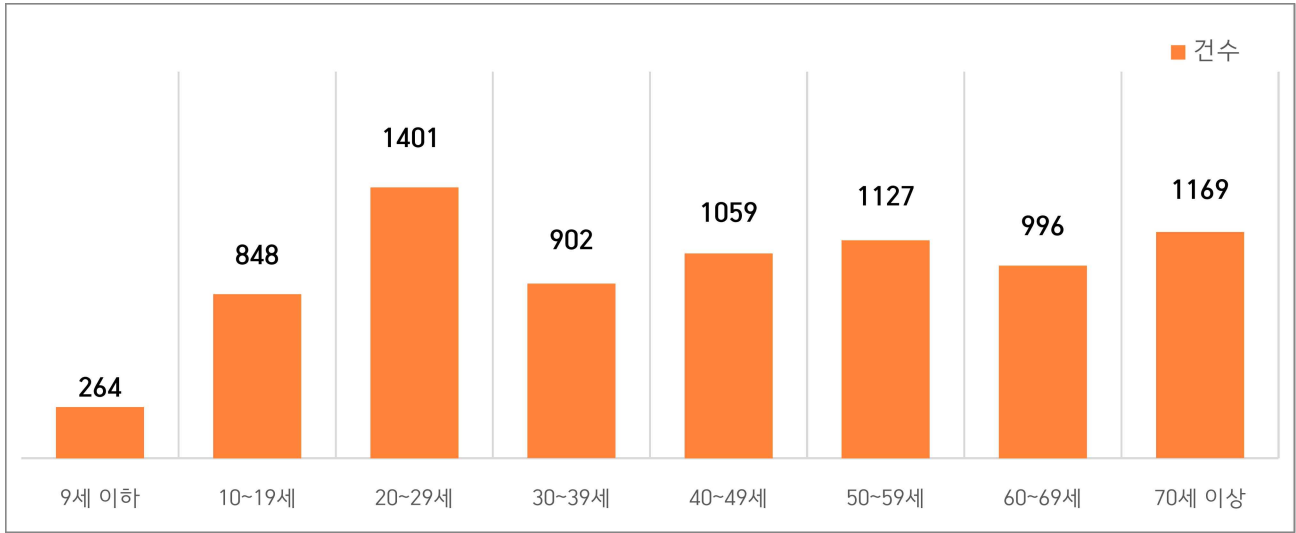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ADHD 치료 등에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뿐만 아니라 우울증,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 성향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¹⁾
- 더욱이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7,766명) 중 10대 환자는 848명(10.9%)로 이 중 80.5%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뿐만 아닌 이로 인한 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연합뉴스(2022.10.6.), ‘심각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우리 아이들마저 병든다(종합)’; 경기일보(2023.7.7.), “청소년 약물 오남용 심각… 강력한 감시체계 필요” [약에 취한 대한민국②]; 형사정책연구원(2023.12.), 형사정책연구(제34권 제4호), 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심혜인),

[그림-1] 중독질환 연령대별 분포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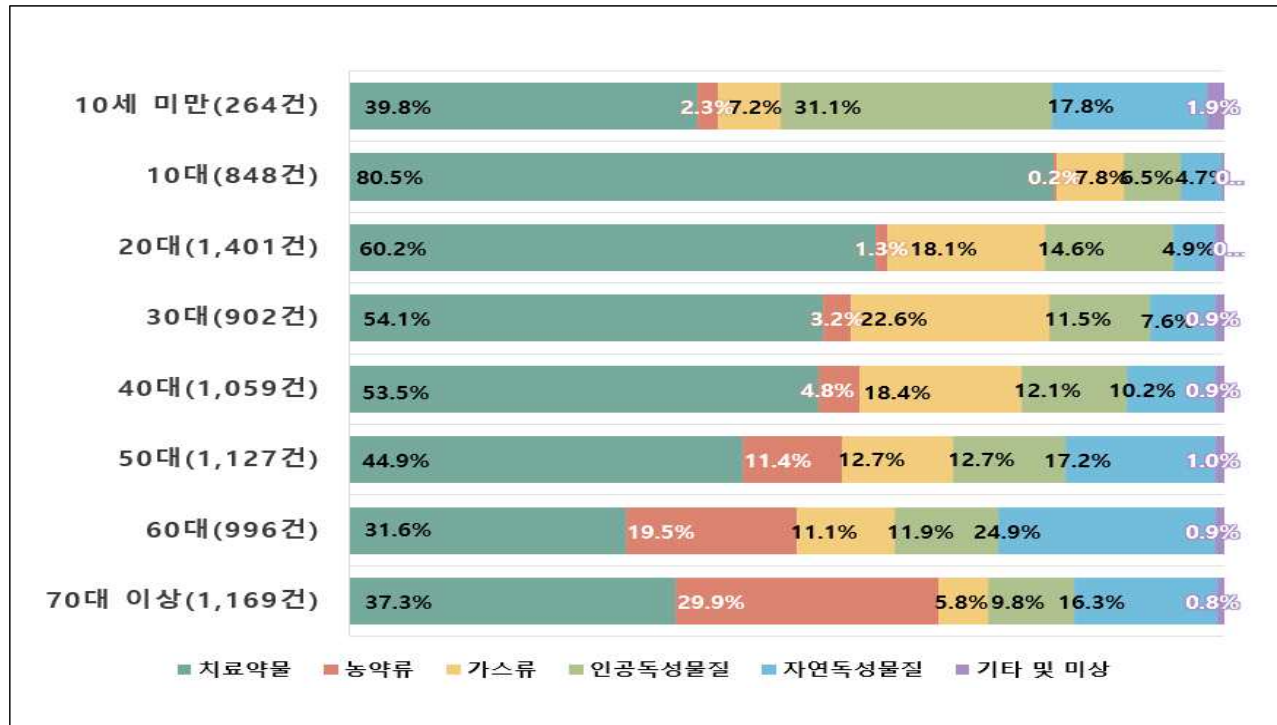


* 출처: 질병관리청(2024.3.17.), 「중독 심층 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3.1.~12.

***조사대상: 전국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

[그림-1] 치료약물 중독환자 발생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2024.3.17.), 「중독 심층 실태조사」

-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제2차 학생건강 증진 기본계획('24~'28)」을 통해 학생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약류 등 각종 유해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²⁾,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예방교육의 역량강화와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³⁾에 있습니다.

[표-1]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개선 관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구분	예방 교육 강화	처벌 강화	치료·재활 강화	기타
응답수	1,837	1,510	256	71
백분율	50.00	41.10	6.97	1.93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23.7.실시, 총 3,674명 참여)

- 이처럼 유해약물은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해당 약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약물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고, 학교 내 캠페인 등을 통해 학교에서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예방교육의 실시 등(안 제7조제5항)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제5항은 학교의 장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

2) 교육부(2023.10.),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 p.17~32.

- 교육부는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SNS 등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게시글 등에 대해 서면(전자)심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에 대한 학교급별 교육 이수 시간 확보·실시, 교육자료 개발 및 예방프로그램 도입하고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유 지원 시설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3) 교육부(2024.1.), 「2024년 학생건강증진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p.12~13.

- 교육부는 초·중·고교에 전문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정을 자격을 갖춘 전문가(법무부 지원 법교육,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음. 또한 학교·교육청에게 마약류와 관련하여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연계하도록 하였음.

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의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장이 학생 및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⁵⁾.

- 그러나 이와 같은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에서는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이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2]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교육 경험	예방 교육 구분			
	음주	흡연	환각성 물질 및 약물	고카페인(에너지) 음료
있음	61.0%	86.9%	43.2%	35.9%
없음	39.0%	13.1%	56.8%	64.1%

* 대상자: 총 17,140명(초등학생: 5,249명, 중학생: 5,490명, 고등학생: 6,401명)

**기 간: 2022.9.14.~2022.11.14.(「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함)

4)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교육부는 금번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사이버 예방교육을 포함한 초·중·고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에서 마약류를 특화한 예방교육을 학교급별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실시하기로 하는 등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표-3]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개정 내용(약물 오남용 교육시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24학년도부터 반영)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이버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총 10시간 실시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 중 학교급별 <u>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시간 구분* 제시</u> * 실시시간 : 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출처: 서울시교육청(2024.2.), 「2024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 이처럼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은 학교에서 예방 실적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교육에 참여해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⁶⁾.
- 따라서 안 제7조제5항은 이러한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2) 홍보 등(안 제9조제3항)에 대한 검토

- 안 제9조제3항은 학교의 장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교육부(2023.10.),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 p.17
 - 교육부는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 이수 시간을 확보·실시하고, 교육자료 개발 및 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발표하였음(*교육실시 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메타버스, AR, VR 등)을 이용한 체험형 교육자료 개발). 또한 학교에서 해당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용 교수·학습자료를 개발·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는 학교장에게 학생 스스로가 약물에 대한 오·남용의 위해성을 방지하는 활동을 지원하게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유해약물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안 제9조제3항은 이러한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088, 2024. 4. 15.).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현주(2180-8272)
----------	----------------	-------	----------------